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3. 12. 29.>

■ 雇用保険法施行規則 [別紙第32号書式] <改正2023年12月29日>

☐ 근로시간 조정

☐ 労働時間の調整

년 제 차(월분) 고용유지

☐ 교대제 개편

지원금 신청서

年 第 回 (月分) 雇用維持

☐ 交代制の改編

支援金申請書

☐ 휴업 등

☐ 休業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グレーの欄に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は当該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3쪽 중 1쪽)

※ 3ページの作成方法を読んで記入してください。

(全3ページ中1ページ)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처리기간 : 10일 処理期間 : 10日
--------------	------------	--------------------------

사업주 事業主	대표자 성명 代表者の氏名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法人登録番号)	
	사업자등록번호 事業者登録番号	상호명(법인명) 商号名 (法人名)	
	기업규모 企業の規模	[] 우선지원대상기업 優先支援対象企業	[] 대규모기업 大規模企業

사업장 事業場	① 사업장관리번호 ① 事業場管理番号	소재지 所在地	담당자 성명 担当者の氏名
	② 담당자 전화번호 ② 担当者の電話番号	담당자 팩스번호 担当者のFAX番号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担当者の電子メールアドレス
	사무실: 事務室: 휴대전화: 携帯電話番号:		
	업종명 業種名	업종코드 業種コード	

③ 파견·수급 사업장인 경우 ③ 派遣・受給 事業場の場合	사용(도급) 사업장관리번호 使用(請負)事業場の管理番号	사용(도급) 사업장 근무 중인 피보험자 수 使用(請負)事業場に勤務している被保険者数
---	----------------------------------	--

④ 신청자격 ④ 申請資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 해고·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雇用維持支援金の支給対象となる労働者は雇用保険の被保険資格を取得後90日が経過した労働者であり、日雇い労働者、解雇・勧告による退職が予定されている者、事業主の配偶者及び直系尊属・卑属に該当しません。	[] 예 [] はい [] 아니오 [] いいえ
------------------	--	---------------------------------------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 연월일 受付年月日							
공람 供覧	담당 担当		팀장 チーム長		과장 課長		소장 所長		결재 연월일 決裁年月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div> <div>⑮</div> <div>년 월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금 신청내역</div> </div> <div> <div>⑮</div> <div>年 月 雇用維持措置及び支援金の申請内容</div> </div>				
번호 番号	성명 氏名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 雇用維持措置に よって短縮され た労働時間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雇用維持措置の期間中に賃金 保全のために支給した金品	지원금 신청액 支援金の申請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예시> <例>	홍길동 ホン・ギルドン	50시간 50時間	350,000원 350, 000ウォン	233,330원 233, 330ウォン
	800200-1000000			
1				
2				
계 合計				

⑮

사업주 확인서

⑮

事業主についての確認書

-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事業主が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は支援金の申請対象から除外されま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
 - 「雇用保険法施行令」第19条第1項に基づき、雇用維持措置期間とその後の1ヵ月間に雇用調整によって被保険者を転職させた場合
 - 나. 이 신청 당시 고용보험료 체납 상태인 경우
 - この申請時点で雇用保険料が滞納となっている場合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雇用保険法」第26条の2、同法施行令第40条及び第40条の2に基づき、事業主に支援される各種支援金及び奨励金は重複して支援されません。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雇用保険法施行令」第19条第2項に基づき、事業主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は、当該月の雇用維持支援金は支給されません。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雇用維持措置期間中に従業員を新しく雇用する場合
 - 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3年以上連続して同じ月に雇用維持措置を実施する場合
 - 다.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 雇用維持措置を行う日の前日までの2年間に雇用維持支援金を支給された事実がある場合は、その雇用維持措置期間の最後の日の翌日から6ヵ月以内に雇用調整によって所属する被保険者の100分の10以上を転職させた場合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계획 포함)에 대해 변경신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100분의 50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4. 「雇用保険法施行令」第20条の2及び「雇用保険法施行規則」第32条の2に基づき、事業主が雇用維持措置計画（変更計画を含む）について変更申告をせず、次の各目のいずれかを雇用維持措置計画の100分の50未満で実施した場合は当該月の雇用維持支援金の全部を支給せず、100分の50以上を実施した場合は実際の内容に応じて雇用維持支援金を算定して支給します。

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イ. 雇用維持措置の対象者数

나. 고용유지조치기간

ロ. 雇用維持措置の期間

다.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ハ. 雇用維持措置期間中に支給した金品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계획 포함)과 다르게 지원 대상 근로자가 조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신청내역에서 해당 근로자와 해당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5. 「雇用保険法施行令」第19条第1項に基づく雇用維持措置の期間中に休業等の雇用維持措置を行わず、雇用維持措置計画（変更計画を含む）と異なって支援対象の労働者が働いた場合は、支援金申請書を提出する際に申請内容から当該労働者と当該金額を除外する必要があります。

6.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해당 부정수급액 또는 부정수급하려는 금액의 2배 또는 5배의 추가징수와 함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6. 「雇用保険法」第35条に基づき、虚偽若しくは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支援金を受け取ろうとしたか、受け取った場合は同法施行規則第78条に基づき既に支給された支援金の返金措置及び当該不正受給額又は不正受給しようとした金額の2倍若しくは5倍を追加徴収すると共に、最大1年間の範囲内で同法施行令 別表2に基づき支援金の支給が制限されます。

7.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勤労基準法」第46条に基づき、短縮された労働時間に対して休業手当（平均賃金の100分の70又は通常の賃金）を支給しない場合は同法第109条に基づき3年以下の懲役又は3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されます。

8. 이번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본인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향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이용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8. この支援金申請書を提出する際、円滑な処理のために申請人本人は雇用維持措置の対象者の氏名・住民登録番号の取得・利用に関して今後申請書の処理に必要な事実関係の確認等公的業務を行う上で必要な範囲内で利用されることを説明し、対象者から同意を受けたことを確認しました。

9.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9. 申請人は上記の内容を理解し、この申請書を提出す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직인)
年	月	日	申請人(事業主):	(署名又は職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関する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私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基づく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1ページの担当公務員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但し、同意しない場合は、申請人が関連書類を自ら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事業主)

(署名又は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個人情報の取得及び利用に関する同意書 (選択)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この民願の処理結果についての満足度調査及び関連制度の改善に必要な意見調査のため、郵便又は携帯電話等で関連情報等を受信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①個人情報の取得及び利用目的: 関連制度の広報資料の提供及び制度の改善に必要な意見調査等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取得する個人情報の項目: 申請人の氏名、住所及び携帯電話番号等の連絡先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3년

③個人情報の取得及び利用期間: 当該雇用維持支援金の申請後3年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④同意を拒否する権利等の案内: 申請人は、個人情報の取得及び利用に関する同意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その場合は雇用労働部が提供する雇用維持支援金の案内及び関連情報等の提供を受けられなくなります。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上記のとおり、個人情報を取得・利用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か? [] 同意する [] 同意しない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事業主)

(署名又は印)

작성방법 作成方法

1. ①란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1. ①の欄には事業주가雇用保険成立届を提出して発行された事業場別固有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2. ②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서 심사를 위하여 연락 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의 연락처,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②の欄には管轄する地方雇用労働官署に申請書の審査のために連絡若しくは訪問、又は書類補完の要請時に該当業務を行う担当者の連絡先、FAX番号、電子メールアドレスを記入してください。
3. ③란은 신청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인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용(도급)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와 해당 사용(도급)사업장에 근무 중인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3. ③の欄には申請人が「雇用保険法施行令」第19条第4項に基づき雇用維持措置を行った派遣事業主若しくは受給事業主である場合、雇用維持措置の対象となる労働者が働いている使用(請負)事業場の事業場管理番号と当該使用(請負)事業場に働いている被保険者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
4. ④란은 해당 사항을 '예'와 '아니오'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4. ④の欄には該当する事項について「はい」か「いいえ」で回答してください。
5. ⑤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관계의 근로자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이하(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5. ⑤の欄には雇用維持措置を行った (月)の末日時点の全ての被保険者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この場合、日雇い労働者・解雇・勧告による退職が予定されている者、事業主(法人の場合は代表者)の配偶者及び直系尊属・卑属の関係である労働者又は被保険資格の取得期間が90日以下(雇用労働部長官が決めて告示するところによって被保険資格の取得期間が異なる場合はその期間を指します)の者は除きます。
6. ⑥란은 ⑤란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지조치를 한 근로자 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로 총근로시간이 감소된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6. ⑥の欄には⑤の欄の全ての被保険者のうち、雇用維持措置を行った労働者の数(労働時間の調整、交代制の見直し、休業等雇用維持措置によって総労働時間が減少した被保険者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
7. ⑦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해당 월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것을 적습니다.
7. ⑦の欄には雇用維持措置を行わなかった場合の当該月の全ての被保険者の所定労働時間を記入してください。ただし、「勤労基準法」第53条に基づく延長労働が繰り返行われた場合は、当該月の全ての被保険者の所定労働時間に雇用維持措置を行った日が属する月の直前3ヵ月間の全ての被保険者の月平均延長労働時間を合算したものを記入してください。
8. ⑧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월) 동안 “⑤란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근무한 총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8. ⑧の欄には雇用維持措置を行った (月)間「⑤の欄の全ての被保険者数が働いた総労働時間の合計」を記入してください。
9. ⑨란은 ⑦에서 ⑧을 뺀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9. ⑨の欄には⑦から⑧を差し引いた労働時間を記入してください。
10. ⑩란은 $(9/7) \times 100$ 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10. ⑩の欄には $(9/7) \times 100$ 의算定内訳を記入してください。
11. ⑪란은 ⑨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 총액을 적습니다.
11. ⑪の欄には⑨の短縮された時間に対して事業주가労働者に支給した休業手当等金品の総額を記入してください。
12. ⑫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 그 외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12. ⑫の欄には「雇用保険法施行令」第12条に基づく優先支援対象企業は2/3、その他の企業は1/2に印を付けます。
13. ⑬란은 ⑪에 ⑫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⑬の欄には⑪に⑫を掛けた金額を記入してください。
14. ⑭란은 사업주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를 적습니다.
14. ⑭の欄には事業主名義(法人の場合は法人名義)の口座を記入してください。
15. 2쪽 ⑮란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⑨와 ⑪항목을 적습니다.
15. 2ページの⑮の欄には雇用維持措置の対象となる労働者別に⑨と⑪の項目を記入してください。
16. 2쪽 ⑯란은 사업주가 지원제외 사항 및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사항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16. 2ページの⑯の欄には事業주가支援排除事項及び不正受給に関する措置等留意事項について必ずご確認の上、署名してください。

처리절차
処理の流れ

